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한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2024. 1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I. 검토 배경	4
II. 현황 및 개선 필요성	5
1. 형사사건 통계 및 현황	5
가. 형사사건 접수건수 및 처리기간	5
나. 형사재판부의 실무 현황	7
2. 재판실무 및 문제점	8
가. 통상적인 형사단독 재판절차(자백 사건)	8
1) 자백 사건의 비율 → 약 85~90%	8
2) 자백 사건 재판절차(예시)	9
나. 문제점	11
1) 절차 준수 사례의 문제점 → 심리 충실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무관한 절차 과중	11
2) 절차 간소화 사례의 문제점 →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 위반	13
III. 해외 주요 국가의 간이재판절차	14
1. 영국	14
2. 미국	16
3. 독일	18
4. 프랑스	20
5. 일본	21
6. 정리 및 시사점	22
IV.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개관	22



1. 간이공판절차의 연혁	22
가. 제도의 도입	22
나. 특별법에 따른 심판대상의 확대	23
다. 심판대상의 일반적 확대	23
2. 현행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및 내용	24
가. 절차개시의 요건	24
나.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26
1)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	26
2) 증거조사 방식의 간략화	27
3) 공판조서 기재의 간략화	28
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	31
1) 취소의 사유	31
2) 취소의 절차	32
3) 취소결정 후의 절차	32
V. 간이공판절차의 운용 실태	33
1. 간이공판절차 이용 현황	33
2. 간이공판절차 회부사건 수 감소 원인	34
가.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으로서 '자백' 요건의 엄격성	34
나. 통상공판절차와 간이공판절차의 동조화	37
VI.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40
1.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필요성(요약)	40
2.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41
가. 방향 → 자백 외 당사자에게 선택권 부여	41
1) 자백 요건의 경직성 극복 필요	41
2)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 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회부	42
나. 개정안 예시	43
다. 장점 및 한계	44



라. 개정안에 대한 상정 가능한 비판론과 이에 대한 반론	45
3. 21대 국회 논의 경과	46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46
나. 21대 국회 논의 경과	48
VII. 결론	49

건의문에 포함될 개선방안

사건의 특성 및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증거조사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이 마련되어야 함



I. 검토 배경

■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임

■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 필요성

- 사법자원, 특히 법관 및 직원의 수와 법정에서의 시간은 한정적이므로, 공개된 법정에서의 실질적 심증 형성을 위하여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① 사건의 특성이나 개별 증거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낭독·제시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하게 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심증 형성에 필요한 중요 증거 위주로 효과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음
 - ② 나아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보다는 양형심리 또는 법리에 대하여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요청임
 - ③ 효율적 심리를 통하여 확보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으로서의 간이공판절차 활성화 및 요건 재설계 방안 검토

- 현행법상 탄력적·효율적 증거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간이공판절차는 여러 이유에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함
 - 특히 후술하듯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인 ‘자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은 활용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나아가 자백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법리나 범의만을 다투는 사건 등 많은 사건에서는 모든 증거를 낭독·제시하는 등 예외 없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



치는 것이 법정에서의 심증 형성과 무관하고 오히려 효과적인 심증 형성을 방해하며, 무엇보다도 재판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실무상으로도 형사소송법상 모든 증거조사 규정이 모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향후 위법성 문제가 대두될 위험성이 적지 않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인 ‘자백’ 외에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요건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형사사건 통계 및 현황

가. 형사사건 접수건수 및 처리기간

■ 1심(고합) - 접수, 처리

연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건수 (인원수)	판결건수 (인원수)	항소건수 (인원수)	접수대비 처리율(%)	항소율			무죄율(%)
						검사	피고인	전체	
2019	17,990	18,072	17,058	11,214	100.5	31.4%	55.2%	65.7%	4.9%
2020	19,340	16,874	15,788	10,655	87.2	33.7%	57.4%	67.5%	4.3%
2021	18,792	17,968	16,902	10,998	95.6	33.0%	54.5%	65.1%	5.8%
2022	21,316	19,798	18,642	11,630	92.9	31.3%	52.4%	62.4%	7.7%
2023	21,488	22,441	21,244	14,218	104.4	36.4%	55.6%	66.9%	7.9%

- 최근 5년간 접수·처리건수가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1심(고합) - 처리기간

1) 평균소요일수(사건 기준)



연도	처리기간					
	접수~첫기일 ¹⁾			접수~종국 ²⁾		
	전체	구속	불구속	전체	구속	불구속
2019	43.1	29.3	52.4	158.7	122.5	174.0
2020	50.7	32.0	62.0	176.5	131.3	194.2
2021	59.1	35.5	70.8	197.7	138.3	217.0
2022	62.6	34.1	75.7	203.9	141.3	223.6
2023	65.9	35.6	80.2	208.4	144.1	228.7

● 처리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1심(고단) - 접수, 처리

연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건수 (인원수)	판결건수 (인원수)	항소건수 (인원수)	접수대비 처리율(%)	항소율			무죄율(%)
						검사	피고인	전체	
2019	184,805	175,884	166,629	70,687	95.2	15.3%	34.4%	42.4%	2.5%
2020	196,144	184,398	175,202	72,643	94.0	14.7%	34.0%	41.5%	2.1%
2021	171,584	176,435	168,329	74,082	102.8	17.6%	35.5%	44.0%	2.4%
2022	164,503	169,634	161,313	70,657	103.1	17.4%	35.7%	43.8%	2.3%
2023	176,472	171,426	163,427	77,910	97.1	19.6%	38.6%	47.7%	2.1%

● 2022년 이후 접수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1심(고단) - 처리기간

연도	처리기간					
	접수~첫기일			접수~종국		
	전체	구속	불구속	전체	구속	불구속
2019	56.3	24.7	60.8	144.6	95.9	150.4
2020	70.6	26.8	75.7	156.9	105.2	162.2
2021	81.4	30.6	86.8	176.6	118.3	181.9
2022	79.6	31.2	84.7	181.5	116.7	187.2
2023	79.4	30.2	85.4	179.8	110.7	186.8

2) 평균처리일수(피고인 기준)



- 처리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요약

- 접수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처리기간은 최근 5년간 상당히 증가함
- 다른 변인을 제외하고서라도, 사건의 복잡화 및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 증가로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절대 필요 시간은 계속 증가 → 심리 효율화 필요성 증가

나. 형사재판부의 실무 현황

▣ 재판기일 다, 개별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부족

- 형사합의부는 주 2~4회, 형사단독은 주 2회 재판 → 재판 준비시간, 판결서 작성 시간을 고려할 때 재판기일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움
- 형사단독의 경우 증인 없는 사건의 경우 10분에 2~3건 진행하여야 재판부 유지 가능 →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는 심리의 충실화 및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추세 및 재판 시간 증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음 →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반영
-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함께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증가할 수 있음 →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위한 재판 시간 증가

▣ 사건 처리기간 증가와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 ① 위와 같은 재판 시간 증가는 사건 처리기간 증가로 이어지고, 최근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② 나아가 재판 시간 증가는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사무분담 불균형 문제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 재판실무 및 문제점

가. 통상적인 형사단독 재판절차(자백 사건)

1) 자백 사건의 비율 → 약 85~90%

- 아래 표 ‘증인 있는 사건’의 비중을 비추어 볼 때, 자백 사건 비율은 85~90%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음

연도	구분	처리인원수	증인이 있는 사건 수[비중(%)]	증인 수
2019	합의	18,071	4,004 (22.1%)	15,730
	단독	217,816	23,804 (10.9%)	66,282
	합계	223,504	26,039 (11.7%)	75,173
2020	합의	16,869	3,660 (21.6%)	14,542
	단독	228,119	23,268 (10.1%)	63,721
	합계	230,927	27,352 (10.9%)	79,876
2021	합의	17,963	3,852 (21.4%)	14,154
	단독	215,527	24,327 (11.2%)	65,977
	합계	233,490	28,179 (12.0%)	80,131
2022	합의	19,800	4,044(20.4%)	14,878
	단독	203,704	21,995(10.7%)	60,295
	합계	223,504	26,039 (11.6%)	75,173
2023	합의	22,443	4,719(21.0%)	18,888
	단독	208,484	22,633(10.8%)	60,988
	합계	230,927	27,352 (11.8%)	79,876

- 통상적으로 부인 사건의 경우 증인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함 → 물론 ① 부인하면서도 법리만을 다투는 경우 증인이 없을 수 있고, ② 자백하면서도 양형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증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나, 대체적으로는 ‘자백 사건 수 ÷ 증인 없는 사건 수’로 추산 가능



2) 자백 사건 재판절차(예시)

▣ 모두절차

-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공소의 요지 진술
- 변호인과 피고인의 모두진술: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이익되는 사실 진술

▣ 검사 제출 증거서류 등 조사

- 검사의 증거 신청(증거목록 제출)
- 변호인의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 동의
- 증거조사
 - 관련 법령(증거서류) → 신청인의 낭독 / 신청인 또는 재판장의 요지 고지 / 제시·열람 등

[형사소송법]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³⁾
- ⑤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 ① 법 제292조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2조제1항·제2항·제4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증거물) → 제시

3)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낭독, 고지는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음성, 영상자료) → 재생 청취·시청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③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 실무례

	절차 준수 사례	절차 간소화 사례
증거서류	신청인의 모든 증거서류 낭독 ⁴⁾ > 신청인의 모든 증거 요지 진술 > 재판장의 모든 증거 요지 고지	신청인의 일부 증거 요지 진술 ⁵⁾ > 재판장의 일부 증거 요지 고지 > 제출만으로 같음
증거물 ⁶⁾	직접 또는 실물화상기로 제시	미제시(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증거서류와 함께 조사)
음성·영상자료	전부 재생	중요 부분 일부 재생 > 미재생

4)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예시: “검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 ②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 피고인 제출 증거조사

- 검사 제출 증거조사와 대체로 동일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추가 증거조사 신청 가능성 고지

-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실무례 예시

재판장: 변호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재판장: 혹시 추가로 신청하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나. 문제점

1) 절차 준수 사례의 문제점 → 심리 충실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무관한 절차 과중

▣ ① 절차의 준수가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구현 및 심리 충실화와 무관함

-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자백 사건이나 법리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거조사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음 → 모든 증거에 대하여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낭독이나 내용 고지를 한다고 하여 법관의 법정에서의 추가적 심증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이러한 사건에서는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상 법정에서 양형 및 법리에 관한 공방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을 빼앗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오히려 방해함

6) 증거물인 서면 포함



- 법정에서의 실질적 공방과 심증 형성이라는 공판중심주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세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특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선별 조사는 불가능한 구조**

■ ②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도 무관함**

-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심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형량·법리**
 - 이러한 경우까지만 증거서류 낭독고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사실관계 판단을 위한 일반적 절차를 일일이 거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도 반함**
- 당사자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여도 **부인 사건**에서는 간이한 재판 진행 불가

■ ③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 형사단독의 경우 주 2회 이상 재판, 10분에 2~3건 재판을 진행하여야 접수 대비 처리율을 맞출 수 있는 구조 → 1건당 할애 가능 시간이 많지 않음
-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건의 특성에 맞게 증거조사 방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은 불가능한 구조**
 - ① **사실관계가 주된 쟁점인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이나 법리를 충실하게 심리하되, 불필요한 증거조사는 간이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②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중요 증거를 위주로 강약을 조절한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할 필요
 -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활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고, 간이공판절차의 활용도도 저조함



- 법정에서의 상세한 증거조사를 한다고 하여 즉일선고는 사실상 어려움(혹시 빠뜨렸을지 모르는 누범·집행유예 결격 전과, 각종 양형 요소 확인 필요) → 법정에서의 상세한 증거조사가 업무 경감 또는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지 않음

2) 절차 간소화 사례의 문제점 →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 위반

■ 현행법상 엄격한 증거조사 규정

- ① 증거서류 → 신청인의 낭독 / 신청인 또는 재판장의 요지 고지 / 제시·열람
- ② 증거물 → 제시
- ③ 음성, 영상자료 → 재생 청취·시청
- ④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추가 증거조사 신청 가능성 고지

■ 앞서 본 것과 같이 현재 증거조사를 간이하게 진행하는 실무례 다수 존재 (특히 형사단독 재판)

- 중요 증거에 대하여만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 나머지 증거에 대하여는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 법원사무관등에게 증거서류를 낭독하게 하거나, 재판장, 법원사무관 등이 증거서류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법 제292조 제1~4항)
- 증거서류를 제시만 하고 열람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법 제292조 제5항)
-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녹화된 매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법 제292조의3)
- 증거조사결과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는 경우(법 제293조)

■ 간소화 진행의 경우 향후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큼

- 공판정에서의 절차 진행에 대한 당사자의 관심이 증대되어 증거조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다툼 등 공판절차에서의 공방이 더 치열해짐



- **공판절차의 녹음 증가로 절차 미준수가 문제될 소지도 점점 증가**
 - 법정녹음물⁷⁾은 공판기록의 일부이므로(규칙 제29조⁸⁾),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학술연구 목적 등을 이유로 위 법정녹음물의 열람·복사가 가능함(법 제59조의²⁹⁾)
 - 특히 형사전자소송 도입 시 공판절차 진행 관련 모든 전자정보 기록 가능 ⇨ 위 정보와 통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 불필요한 위법성 다툼 사례 발생 가능

- ① 당사자 중 일방이 실제로는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면서 증거서류 낭독 등 절차규정 위반을 문제 삼아 그에 관하여 상당 기간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
- ② 항소심에서 절차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증거서류 낭독 등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한 후 동일한 판결을 선고하는 사례
- ③ 절차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여 피고인이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종전과 동일한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

Ⅲ. 해외 주요 국가의 간이재판절차¹⁰⁾

1. 영국

▣ 재판의 유형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

7) 21대 국회에 전면적인 법정녹음 의무적 실시(당사자 동의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에 관한 형사소송법(제56조의 2)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음(의안번호: 2103306,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 법정녹음이 전면 실시될 경우 현재의 형해화된 증거조사 방식도 문제될 수 있음

8) 형사소송규칙 제29조(조서에의 인용)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9)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0) 탁상진,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3);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연구책임자 최준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2024) 초안 등 참조



- ① 반드시 왕립형사법원(Crown Court)의 공식재판절차(indictment trial)에 의해야 하는 사건[for trial(indictable only)] → 살인, 과실치사, 강도, 강간, 중상해 등의 중대한 범죄
- ② 반드시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에서의 간이재판절차(summary trial)에 의해야 하는 사건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청소년범죄, 교통 관련 범죄
- ③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한 사건(triable either way) → 협박, 폭행, 상해, 중혼, 유아유기, 절도, 위험운전범죄 등

■ **간이재판절차 적극 활용 + 일정 유형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절차 선택권 보장**

- 모든 사건은 일단 치안법원에 공소제기됨
- 경미사건의 경우 치안법원이 직접 간이재판절차를 진행 → 중죄 사건은 왕립형사법원(Crown Court)으로 이송
 - 경미사건과 중죄 사건의 중간영역이 존재함 → ‘선택가능범죄’ 사건

- ▶ 경미범죄(summary offence): 각각의 형사처벌조항에 경미범죄 여부가 개별적으로 명시
- ▶ 선택가능범죄(triable either way offence): 치안법원법 제17조 별첨 1에 나열
- ▶ 위 두 범죄를 통칭하여 ‘경미사건 등’ 이라고 칭함

- 선택가능범죄의 관할 결정절차 → 재판유형결정(allocation decision) 절차
 - 원칙적으로 치안법원이 재판유형결정권 행사
 - 재판유형결정의 판단기준
 - ① 무죄 주장 사건은 피고인에게 선택권 부여
 - 기소인부절차에서 피고인 무죄 주장 시,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절차 진행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
 -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원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안판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왕립형사법원으로 이송



- ② 유죄 인정 사건은 예상 선고형량이 치안 판사의 양형 가능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왕립형사법원으로 이송
- 간이재판절차의 경우 우편에 의한 유죄 인정 여부 의견 진술 허용, 일정한 경우 궤석 재판도 가능, 재판절차 간소화

2. 미국

■ 범죄 구분

● 연방법상 범죄 구분

- 중죄(felony, 1년 초과 15년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 경죄(misdemeanor, 5일 초과 1년 이하까지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 위경죄(infraction, 5일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 주법상 범죄 구분

- 연방법과 유사: 대표적인 예로 뉴욕 주의 경우 위반죄(violation), 경죄(misdemeanor), 중죄(felony)로 구분

■ 주법원의 간이법원, 치안판사 제도 → 간이재판절차 적극 활용 + 일정 유형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절차 선택권 보장

- 대부분의 주에서는 통상의 1심 지방법원(District Court)의 하급법원 또는 이와 관할을 달리하는 병렬적인 법원으로 제한적인 관할권을 갖는 간이법원을 설치하여 전체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는 전체 주를 각기 다른 행정구역에 따라 관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는 여러 형태의 간이법원을 두고 있음
 - 명칭이 다른 둘 이상의 간이법원을 두어 기록이 없는 법원(court not of record)과 기록이 있는 법원(court of record)으로 구분하고, 기록이 없는 간이법원은 경죄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배심절차가 배제되고 소송상 주장 및 증거개시도 제한되며 증거법칙 역시 철저히 지켜지



지 않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재판을 개시하게 됨

- 간이법원의 대부분은 치안판사(magistrate)로 구성되는데, 모든 경미범죄(petty offense)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치안판사 관할사건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경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치안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을 동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 치안판사의 관할범위는 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월 이하의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이거나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모든 경죄를 포함하고, 그 밖에 중죄와 다른 경죄사건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피의자에 대한 조기 1회 심문(initial appearance) 및 보석, 국선변호인 지정, 예비심문절차 등을 관할함

■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 기소인부절차란 공소가 제기된 후 공판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유죄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심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함
- 통상 공소제기 후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소된 사실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배심원에 의한 정식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다음 기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 것이 기소인부절차인데, 이 때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게 되면 증거조사가 생략된 채 곧바로 양형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됨
- 경죄사건에서는 최초출정절차(initial appearance)에서 기소인부절차가 진행됨
 -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피의사실 기재서(statement of facts)를 가지고 담당 검사에게 보고 → 경찰관의 체포과정이나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검사가 체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고소장(complaint)을 작성 → 체포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입건 및 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검사의 판단에 따른 고소장이 제출되면 치안판사 앞에 즉시 인치되어 심문을 받음(최초출정절차)



- 기소인부절차 법정에서는 검사가 혐의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기소인부 답변을 하며, 유죄협상이나 보석 등의 절차가 진행됨. 기소인부법정에서 피의자는 유무죄 답변을 하게 되고,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됨
- 이 경우 피의자가 유죄답변을 하면 대체로 법원은 즉시 형을 선고함. 반면 피의자가 무죄답변을 하는 경우, 체포 경찰관이나 고발인이 법정에 출석해 있다면 경죄 피의자는 간략한 절차에 따른 통상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략 2주 후로 공판기일이 지정되는데, 이 때 재판은 배심에 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심리방식을 차별화하는 등 절차는 다수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다퉈 있는 사건들에 투입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지게 함
- 실제로 형사입건 피의자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자들의 사건이 최초출정 절차와 기소인부절차 단계에서 종결되고 있음

3. 독일

■ 범죄 구분 및 관할 법원

- 범죄 구분
 - 상대적으로 중범죄로 이해되는 Verbrechen(중죄, 1년 이상의 자유형을 하한으로 하는 범죄)과, 보다 경한 범죄로 인식되는 Vergehen(경죄, 그보다 낮은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유형)으로 나뉨
 - 중죄나 경죄에 미치지 못하는 일련의 비유형적인 행위양상은 경미범죄(Bagatellkriminalität)로 통칭
- 관할 법원
 - ① 구법원은 개인적 범익을 침해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허용되는 사인소 추사건과 경죄 중 벌금형이나 4년 이하의 자유형이 선고될 사건(선고형 기준)



을 관할, ② 지방법원은 중죄사건과 경죄 중 4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이 선고될 사건을 관할

- 구법원은 소송법적으로 단독판사(Einzelrichter)와 참심재판부(Schöffengericht)로 구성되는데, ① 구법원의 **단독판사**는 약식명령청구사건, 신속절차사건과 선고형이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사건 등을 담당하고, ② 나머지 사건은 1인 혹은 2인의 직업법관과 2인의 참심으로 구성되는 **참심재판부**가 담당
 - 단독판사나 참심재판부는 심판권한이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사건을 지방법원(LG)으로 이송하여야 함

■ 신속절차(Beschleunigtes Verfahren)

-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신속절차 진행
 - 검사는 구법원의 형사단독판사나 참심재판부가 담당할 사건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상황이 명백하여 즉각적인 심리를 하기에 적합한 경우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속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신청함**
 - 법원은 신속공판절차의 요건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속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음
 - 신속절차에서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없음
- 신속절차의 내용
 - 구두로 공소제기 가능
 - 증거조사청구권이 제한되고, 증거법칙이 현저히 완화됨. 증인, 감정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수사과정에서의 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독일의 신속절차는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신병이 긴급체포 등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기소 당일 혹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공판을 열고 구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즉시 기소에서 재판까지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4. 프랑스

▣ 범죄 구분 및 관할 법원

● 범죄 구분

- 중죄(crime): 무기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경죄(délit):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 위경죄(contravention):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¹¹⁾

● 관할 법원

- 중죄는 재판장과 배석판사 및 배심으로 구성되는 **중죄법원**(Cour d'assises)에서 처리하고, 경죄는 원칙적으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서 다루며, 제5급 위경죄는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 제1급 내지 제4급 위경죄는 **근린법원**(Juridiction de proximité)에 관할권이 있음

▣ 형사화해제도(la composition pénale)

- 프랑스에서는 업무 폭주로 인한 사법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한 끝에 형사화해제도(la composition pénale)를 도입함
- 형사화해제도는 경미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로서, **검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성년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벌을 대신할 1개 또는 수 개의 제재조치를 제안하고, 피의자의 수락과 판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기소 대체수단임**
 - 대상범죄: 피의자가 경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주형이 5년 미만인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 제안될 수 있는 조치: 벌금의 납부, 몰수, 각종 면허의 정지, 사회봉사, 각종

11) 위경죄는 다시 가장 경한 제1급 위경죄부터 가장 중한 제5급 위경죄까지 5단계로 세분되어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1조, 제131-3조, 제131-4조, 제131-13조)



시설에서의 교육, 수포발행 금지, 차량 유치 및 피해자나 일정한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등

▣ **형사명령제도(l'ordonnance pénale)**

- 경죄 재판에 있어 검사는 경찰수사가 완료되고 피의사실 및 피의자의 책임이나 자력 등의 개인적 상황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동 절차를 청구함 →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없이 무죄 또는 벌금형을 형사명령으로 선고**하고, 변론이나 구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함
- 형사명령이 선고되면 검사, 피고인에게도 통지되고, 검사, 피고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사건은 경죄법원에서 공개재판으로 심리됨

5. 일본

▣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이공판절차 제도 존재**

- 모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기회가 주어질 때 피고인이 유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면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음
- 대상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정되며,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됨(우리나라와의 차이점)
-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증거조사절차 등을 간이화하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게 됨

제291조

③ 재판장은 기소장의 낭독이 끝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 기타 재판소의 규칙에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지한 후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하여 피고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1조의2

피고인이 전조 제3항의 절차에서 기소장에 기재된 訴因에 관하여 유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때에는, 재판소는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유죄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訴因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의3



재판소는 전조의 결정이 있는 사건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거나 또는 이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정리 및 시사점

▣ 사건 유형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제도 마련

- 세계 각국에서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정식재판절차로, 그렇지 않은 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고 있음

▣ 당사자의 선택권 마련: 영국, 미국

-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일정한 경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간이한 재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IV.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개관

1. 간이공판절차의 연혁

가. 제도의 도입

- 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를 신설함(제286조의2, 제286조의3, 제297조의2, 제301조의2, 제381조의3)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의 번잡한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서증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히 심리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에서 오는 인권침해 등 폐해를 제거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음



- 현행과는 달리 자백 시 의무적 간이공판절차 결정 필요
- 영·미의 기소인부절차(arraignement)에서 유래하였으나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간이공판절차에서 많은 영향을 받음

나. 특별법에 따른 심판대상의 확대

- 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간이공판절차의 심판대상을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까지 확대함

제12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된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제297조의2, 제301조의2, 제3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에도 준용되어 성폭력범죄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함(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참조)
- 한편, 위 규정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1997. 1. 1.부터 합의부 심판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그 실질적 의의를 상실하였음

다. 심판대상의 일반적 확대

-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 제286조의2를 개정하여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을 자백사건 중 합의부 심판대상 사건에 대해서까지 확대함¹²⁾

12) 이에 대해서는 당시에 도 간이공판절차의 심판대상은 경미한 사건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음. 위 의견은 사법기관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사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중점을 둔 간이공판절차를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적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자백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과 재판을 피하거나 진범을 은폐하기 위한 전략적 자백도 있



2. 현행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및 내용

가. 절차개시의 요건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심판대상

- 1997. 1. 1.부터 합의부 심판사건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 가능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대상에서 제외(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 특징13)

-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신속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절차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간이하게 진행하는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와 구별됨
- 또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조사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형을 정하는 영미법상 기소인부절차(arrainment)와도 구별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 자백

- 자백의 주체 = 당해 피고인
 - 공동피고인, 변호인, 보조인: ×
- 공판정에서의 자백 = 공판심리절차에서의 자백
 - 수사절차, 증거보전절차(법 제184조), 공판준비절차(법 제266조의5),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절차(법 제273조)에서의 자백: ×

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었음
 13) 편집대표 노태약, 주석 형사소송법(3)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212.



- ‘자백’의 시기 제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으나,¹⁴⁾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의 간이화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간이공판절차 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자백’은 **정식의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
- ‘자백’은 유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죄책까지 인정하여야 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자백 ○	자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심신미약, 자수 등과 같은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단순한 양형요소를 다투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범의 부인하는 경우(95도2297) -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 부인한 경우(97도3421)¹⁵⁾ -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해 중범을 주장하는 경우 - 기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미수를 주장하는 경우 - 장애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중지미수를 주장하는 경우 -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정하나,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 주장하는 경우 - 상습폭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을 부인하는 경우(2004도6176) -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2004도2116)¹⁶⁾

14) 일본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는 피고인이 모두진술 단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때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를 허용하고 있음

15)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피고인신문을 마친 후 증거조사를 하였음

16)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또한,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



▣ 법원의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의 재량에 속함(1995년 법 개정 전에는 의무적 간이공판절차 개시)
- 간이공판절차 회부 결정을 함에 있어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함(규 제131조) ⇒ 이는 피고인의 권익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나아가 이후의 절차에서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고 증거동의의 효과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임(법 제318의3 단서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17)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합니다.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면 증거조사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피고인 측의 의견을 따로 묻지 않습니다.

-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에 대해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룰 수 있을 뿐임

나.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1)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법칙의 원칙적 미적용(동의 간주)
-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은 그대로 적용 → 임의성 없는 자백(법 제309조), 보장증거 없는 자백(법 제310조), 임의성 없는 진술(법 제317조) 등은 간이공

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7) 공판절차 매뉴얼(2017), 198.



판절차에서도 증거능력 無

2) 증거조사 방식의 간략화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통상절차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의 미적용

- 증인신문 시 교호신문 방식 미적용(법 제161조의2, 규칙 제75~81조의 미적용)
- 쟁점정리절차 종료 후로의 증거조사 시기 제한 ×(법 제290조의 미적용)
- 서류·물건의 증거조사 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 불요(법 제291조의 미적용), 그 방법도 반드시 제시, 낭독, 내용 고지, 열람 등으로 제한 ×(법 제292조의 미적용)
- 증거조사의 종료 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증거신청권 고지 불요(법 제293조의 미적용)
-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그들의 진술의 요지를 고지할 필요가 없음(법 제297조의 미적용)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 가능

- 판례는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 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333 판결)로 실시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당한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가 어떤 것인지는 실시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을 상정 가능함



- ①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증거목록과 함께 제출받은 후 증거결정을 함으로써 증거 조사절차를 마치는 유형(제출설)
 - ② 증거의 제출 및 증거결정을 한 후 증거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유형(제시설)
 - ③ 증거의 제출 및 증거결정 후에 증거의 표목과 그것의 입증취지를 간략하게 고지하는 유형(표목 및 입증취지 고지설)
 - ④ 증거의 제출 및 증거결정 후에 증거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는 유형(열람설)
 - ⑤ 증거의 제출 및 증거결정 후에 증거의 표목과 입증취지를 간략하게 고지하되, 이와 함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 증거 중 핵심적인 부분의 요지를 고지하는 유형(보강증거 요지고지설) 등 상정 가능
- 법원실무제요는 ‘보강증거 요지고지설’을 형사소송 및 증거조사 일반 원칙과 증거조사방식의 간이화가 필요한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음
- 증거조사 방식이 간략화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판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 이에 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조사만을 거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음(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3) 공판조서 기재의 간략화

- 증거서류 등 목록의 작성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나, “증거의견”란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음[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



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4조 제1항 단서]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12고단(합) 000													
2012형제0000호													
신청인 : 검 사													
순 번	증거방법					참조사항등	신청 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조사 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중)	증거 명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검사	120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1		
2	ㄴ	130		ㄴ(제2회)	ㄴ	1			1		1		
3	ㄴ	139		수사보고서		1			1		1		
4	사경	40		진술조서	강목격	1			1	○	1		
5	ㄴ	45		ㄴ	이피해	1			1		1		
6	ㄴ	50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1		
7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이 증거목록’ 을 작성할 수 있으나(위 예규 제4조 제2항 참조), 현재 간이 증거목록이 작성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증거방법을 단순히 나열하여 간이하게 작성하는 방법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증 거 목 록</p> <p style="margin: 5px 0;">2000고정000</p> <p style="margin: 0;">신청인 : 검 사</p>



□ 증거방법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4, 36)
- 경찰 진술조서 (23, 25)
- 경찰 진술서 (27)
- 실황조사서 (33)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41)
- 범죄경력조회 (55)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 67)

□ 증거조사

- 제1회 제출, 제1회 채택, 증거조사함

법원사무관 이 을 동 ㉠

- 검사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기록목록의 사본에 “증” 등 적당한 표시방법으로 증거방법을 특정하여 증거신청하는 경우 그 사본의 마지막 기재사항의 다음 줄 아래 중앙 부근에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고무인을 찍고 법원사무관 등이 날인하여 작성하는 방법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년월일	면수
의견서		2003. 10.	1
범죄인지보고	김갑동, 이을동		2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증		2003. 10. 15.	4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증		"	6
진술서 증	이을동	"	8
진단서 증	"	"	9
견적서	"	"	10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증	''	''	1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증	''	''	12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		''	''	14
임시운전면허증발급확인서		''	''	16
피의자신문조서	증	김갑동	''	17
피의자신문조서	증	이을동	''	22
보험가입사실증명원		김갑동	''	29
신분증사본		이을동	''	30
범죄경력조회	증	이을동	''	31

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

1) 취소의 사유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
-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 또는 1인의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증거 조사 절차가 극히 복잡하게 되어 불편한 경우
 - 자백의 임의성이 없는 경우(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자백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
- 간이공판요건의 원시적 흠결(처음부터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후발적 흠결(사후의 사정변경, 예를 들어 공소장 변경에 의한 새로운 공소사실



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이 있는 경우

2) 취소의 절차

-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 공판정에서 함이 원칙이나, 공판기일 외에서 결정서를 작성하여 할 수도 있음
- 사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검사의 의견은 법원에 대해 구속력 없음
- 취소결정도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룰 수 있을 뿐임

3) 취소결정 후의 절차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공판절차를 갱신함이 원칙
 - 여기서의 ‘갱신’은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에 따라 위법하게 된 종전절차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직접주의·구술주의 요청에 의한 판사의 경질에 의한 경우와는 구별됨
 - 갱신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144조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판사가 경질된 경우를 전제로 한 부분(1항 1호, 2호, 4호)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따라 갱신을 행하게 됨 → 결국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한하여 정식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를 실시

형사소송규칙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판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재판장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292조·제292조의2·제292조의3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 없다는 (적극적) 의사를 명시한 경우 갱신할 필요 없음 → 간이공판절차 취소 전 소송절차 그대로 유효(동의 간주되었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도 그대로 유지됨)

V. 간이공판절차의 운용 실태

1. 간이공판절차 이용 현황¹⁸⁾

연도	처리인원수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처리인원수			구성비(%)		
	합의	단독	계	합의	단독	계	합의	단독	계
1998	22,106	179,475	201,581	4,726	95,968	100,694	21.4	53.5	50.0
1999	20,824	174,761	195,585	4,406	86,329	90,735	21.2	49.4	46.4
2000	21,035	171,375	192,410	4,325	80,684	85,009	20.6	47.1	44.2
2001	18,222	182,279	200,501	3,161	71,751	74,912	17.3	39.4	37.4
2002	20,711	189,180	209,891	3,382	76,636	80,018	16.3	40.5	38.1
2003	18,351	195,000	213,351	2,424	75,563	77,987	13.2	38.8	36.6
2004	19,259	217,811	237,070	1,215	70,181	71,396	6.3	32.2	30.1
2005	14,414	212,104	226,518	567	49,876	50,443	3.9	23.5	22.3
2006	17,503	195,288	212,791	1,083	38,454	39,537	6.2	19.7	18.6
2007	16,029	225,457	241,486	712	37,946	38,658	4.4	16.8	16.0
2008	19,665	248,907	268,572	1,302	48,239	49,541	6.6	19.4	18.4
2009	19,086	262,409	281,495	1,216	47,958	49,174	6.4	18.3	17.5
2010	19,587	257,813	277,400	1,103	40,729	41,832	5.6	15.8	15.1
2011	18,688	259,481	278,169	708	33,131	33,839	3.8	12.8	12.2

18)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처리인원수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처리인원수			구성비(%)		
	합의	단독	계	합의	단독	계	합의	단독	계
2012	28,642	259,241	287,883	2,163	23,997	26,160	7.6	9.3	9.1
2013	20,817	239,338	260,155	792	21,806	22,598	3.8	9.1	8.7
2014	21,315	245,762	267,077	199	14,718	14,917	0.9	6.0	5.6
2015	19,674	238,310	257,984	173	11,170	11,343	0.9	4.7	4.4
2016	20,939	247,571	268,510	198	11,403	11,601	0.9	4.6	4.3
2017	19,735	246,689	266,424	113	9,325	9,438	0.6	3.8	3.5
2018	19,343	218,356	237,699	51	6,595	6,646	0.3	3.0	2.8
2019	18,071	217,816	235,887	22	8,202	8,224	0.1	3.8	3.5
2020	16,869	228,119	244,988	9	9,331	9,340	0.1	4.1	3.8
2021	17,963	215,527	233,490	7	6,840	6,847	0.0	3.2	2.9
2022	19,800	203,704	223,504	10	5,621	5,631	0.1	2.8	2.5
2023	22,443	208,484	230,927	6	3,108	3,114	0.0	1.5	1.4

- 간이공판절차의 심판대상이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까지 확대된 1997년경 이후 간이공판절차 이용비율은 약 50%에까지 이르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이용비율이 감소하여 현재는 간이공판회부율이 약 1.4%에 그치고 있음

2. 간이공판절차 회부사건 수 감소 원인

가.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으로서 ‘자백’ 요건의 엄격성

▣ 판례의 엄격한 판단

- 판례는 법 제286조의2 규정의 ‘자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함의 위법을 들어 파기한 사례
 -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 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775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297 판결)



-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 부인한 경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1883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 상습폭행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을 부인하는 경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시 인정 ↔ 반성문, 피고인신문에서 일부 부인

-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진술 시에는 분명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정진술 등을 통한 명확한 진술이 아닌 반성문의 세부적 문구, 피고인신문 과정의 부분적 진술, 양형 관련 변론 내용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자백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
 - 반성문의 세부적 문구 관련 예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9. 24. 선고 2020노249 판결]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술에 취해서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못이겨서 했다’ 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다시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하지만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원심과 동일한 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1423 판결]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에 체크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2018. 4. 2.자 **반성문에는 ‘김영두의 말로는 불법게임이 아니니깐 일해도 안심하라는 말을 믿고 일을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불법행위가 있던 것도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원심과 동일한 형 선고

- 피고인신문 또는 양형 관련 변론 예시

[수원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노8384 판결]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판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신문에서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43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0. 27. 원심에 정상관계에 관하여 ‘심신미약 및 우발적 범행’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고 기재한 변호인의견서(공판기록 60쪽)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심신상실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원심과 동일한 형 선고

■ 실무상 상소심에서의 파기 위험으로 간이공판절차 회부를 주저하는 경향

- 간이공판절차 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조사만을 거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게 되어 상소심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음
→ 1심 재판부 간이공판절차 회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 2017년 발간 공판절차 매뉴얼 서술이나 형사재판실무연수 → 가급적 신중할 것을 권고
 - 공판절차 매뉴얼 기재: “피고인이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거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거나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없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인하거나 경위를 다투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부분적인 공소사실 부인 또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반성문 제출 등을 하는 경



우도 있음 → 간이공판절차의 회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나. 통상공판절차와 간이공판절차의 동조화¹⁹⁾

■ 심리의 편의 측면

- 통상 공판절차에서도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가 사실상 간이화 내지 형해화되어 있어, 이를 더 간략화하기 위한 간이공판절차 회부 필요성 감소

■ 처리기간 단축 측면

- 간이공판절차를 택하더라도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게 되면 통상절차와 처리기간의 차이가 없음
 - 판결은 즉일선고가 원칙(법 제318조의4 제1항 본문)²⁰⁾이나, 즉일선고 사건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최근에는 약 5%대(2012년경까지는 약 30%대 유지)에 머물고 있음(아래 표 참조)
 - 이는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 형해화(공판정에서 실질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변론종결 후 법정 외에서 증거를 검토함이 일반적)와 더불어 양형결정의 시간적·심리적 부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통상공판절차와 간이공판절차의 동조화 현상'과 '간이공판회부율'의 연관성은 과거 일본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일본에서 간이공판회부율은 전통적으로 5%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어차피 통상공판 절차상 공판심리가 간략화/형해화되어 재판장들이 이를 더 간략화하기 위해 간이공판 회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함

20)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에 따른 즉일선고 원칙은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신설되었음. 이는 당시 논의되었던 신속처리절차 도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추진된 것인데,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무산되고, 증거분리 제출제도가 2006. 10.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연일개정(법 제267조의2 제2항), 집중심리(법 제267조의2 제1항) 규정이 위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신설되었음



- 즉일선고는 대부분 사안이 간단하고 벌금형만이 선고 가능하여 집행유예 결정 전과 등의 확인이 불필요한 고정 사건에서 이루어졌으나, 2021. 2. 22.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 증거분리제출이 전면 실시됨²¹⁾에 따라 즉일선고 사건비율은 더욱 감소함

연도	구분	처리인원수	즉일선고 인원수	구성비(%)
2016	합의	20,939	634	3.0
	단독	181,370	27,039	8.2
	고정	66,201	12,045	18.1
	합계	268,510	27,673	10.3
2017	합의	19,735	531	2.6
	단독	187,959	12,796	6.8
	고정	58,739	8,742	14.8
	합계	266,433	22,069	8.2
2018	합의	19,343	475	2.4
	단독	174,010	8,577	4.9
	고정	44,346	4,894	11.0
	합계	237,699	13,946	5.8
2019	합의	18,071	421	2.3
	단독	174,092	7,281	4.1
	고정	43,724	3,516	8.0
	합계	235,887	11,218	4.7
2020	합의	16,869	364	2.1
	단독	184,186	8,566	4.6
	고정	43,933	3,555	8.0
	합계	244,988	12,485	5.1

21) 2021. 2. 22. 재판예규 제1772호로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가 개정되어 즉일선고에 관한 아래 규정도 삭제되었음

제14조 (즉일선고) 정식재판청구의 이유가 상당하지 아니하거나 벌금액수의 조정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될 수 있는 한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이 경우 재판장은 판결초고의 주문란에 선고내용을 기입하여 법정에서 참여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연도	구분	처리인원수	즉일선고 인원수	구성비(%)
2021	합의	17,963	692	3.8
	단독	180,234	8,181	4.5
	고정	35,293	2,329	6.6
	합계	233,490	11,202	4.8
2022	합의	19,800	997	5.0
	단독	170,283	8,273	4.8
	고정	33,421	1,932	5.7
	합계	223,504	11,202	5.0
2023	합의	22,443	1,112	4.9
	단독	208,484	5,428	2.6
	고정	37,059	1,564	4.2
	합계	230,927	8,104	3.5

-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사건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구속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예규에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즉일선고 사건 비율이 감소한 것과 궤를 같이하여 실제로 통상 공판절차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제5조 (판결선고기일의 지정) ①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사안의 복잡, 피고인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한다.

- 더욱이 자백 사건만으로 구성된 간이공판절차 회부사건의 처리기간 누계가 부인 사건도 포함된 전체 처리기간 누계와도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재로서는 사건 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사건 처리기간 누계

구분	연도	1월 이내	2월 이내	3월 이내	4월 이내	5월 이내	6월 이내	9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형사공판	2019	4.8	23.7	45.7	60.1	70.1	77.5	88.3	93.6	99.3	100



사건	2020	3.8	17.0	36.7	52.3	64.0	73.7	87.3	93.4	99.0	100
	2021	3.0	13.8	30.7	45.3	57.0	67.1	83.4	91.0	98.8	100
	2022	3.3	14.1	30.9	45.9	57.7	68.0	82.9	90.1	98.2	100
	2023	3.1	12.8	29.8	45.5	58.4	69.3	84.6	91.1	97.8	100
간이공판 절차	2019	1.2	20.3	48.6	70.9	83.8	90.8	96.7	98.3	99.8	100
	2020	0.8	14.0	40.8	61.7	75.1	84.2	95.7	98.3	99.7	100
	2021	0.6	12.9	34.6	52.7	69.6	81.5	93.9	97.5	99.7	100
	2022	0.6	8.7	26.2	48.53	65.1	77.6	92.3	96.8	99.5	100
	2023	0.6	9.0	39.5	63.2	75.7	83.2	92.3	96.0	99.4	100

VI.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1.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필요성(요약)

▣ 필요성1: 공판중심주의를 실질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형사사법절차 필요

-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자백 사건이나 범리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상 법정에서 양형 및 범리에 관한 공방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을 빼앗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오히려 방해함
- 또한 법정에서의 실질적 공방과 심증 형성이라는 공판중심주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세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특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선별 조사는 불가능한 구조
- 현행 제도는 심리의 충실화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무관하고, 심지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강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및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효율적인 증거조사를 가능하게 할 필요 있음



▣ 필요성2: 하급심 실무례의 위법 소지 제거 필요

- 현재의 실무처럼 심리 효율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는 경우, 향후 상급심에서 증거조사의 위법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큼
- 특히 당사자 중 일방이 실제로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불복하면서 증거조사 규정 미준수 등 절차 규정 위반을 다투는 경우, 상급심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원심을 파기하는 사례 발생 가능 → 사법자원의 낭비

▣ 현재로서의 대안 →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 현재 마련된 신속처리절차로는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가 있는데,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벌금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이용이 제한적이고, 공판절차에서 이용 가능한 제도는 간이공판절차가 유일함
- 기존 신속처리절차 관련 논의(별지 참조)에서 나타난 반대의견 및 법원과 검찰의 입장 차이, 공판중심주의 강화 경향 등에 비추어 기존에 추진하였던 신속처리절차의 도입은 쉽지 않을 수 있음 → 최소한의 입법조치로 제한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자백’ 이라는 단일 요건은 간이공판절차 사용을 위축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질화하고, 사법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형사사법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단,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및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운용 필요

2.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가. 방향 → 자백 외 당사자에게 선택권 부여

1) 자백 요건의 경직성 극복 필요



▣ 간이공판절차 활용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자백'에 대한 엄격한 판단

- 판례의 엄격한 판단 + 반성문·피고인신문 등의 일부 진술에 따른 자백 요건 미충족 사례 多 → 간이공판절차 활용을 지양하는 전반적 분위기

▣ 파기 후에도 결과에 차이 없음 → 무익한 절차 반복

- '1심 간이공판절차 진행 → 자백 없다는 이유로 인한 항소심 파기' 사례에서 유무죄 사실인정이 바뀐 사례는 無²²⁾

구분	그대로인 사안	감형된 사안	형이 중하게 된 사안	유무죄가 달라진 사안 ²³⁾	합계
건수	193	121	17	1	332
비율	58.13%	36.45%	5.12%	0.3%	100%

2)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회부

▣ 추가적 요건으로서의 당사자 쌍방 의사합치(일방의 신청 및 타방의 동의)

- 영국·미국의 예와 같이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자백 요건의 경직성을 극복하여 간이공판절차의 활용도를 제고

▣ 기대 효과

- ① 자백하지는 않지만 법정에서의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사안에서는,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에 부합하게 핵심 증거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효율적인 증거조사 가능
 - 예1)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거나 심신미약 등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사건
 - 예2) 범행의 구체적 태양을 다투기는 하지만(예: 5번 때린 것이 아니라 1번만 때렸다) 유무죄보다는 양형을 염두에 두고 다투는 사건

22)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확인(2024. 8. 1. 기준)

23)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음란성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으로 사실인정이 달라진 사안이 아님



- 예3) 범죄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주로 법리적 판단만 구하는 등 소송의 신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희망하는 사건

- ②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반성문 등에서 일부 부인 진술을 하였다 등의 이유로 상급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원심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간이공판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나. 개정안 예시

■ 예시

현행	개정안
<p>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p> <p>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p> <p><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u>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다.
<p>제286조의3(결정의 취소)</p> <p>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검사의 의견을 들어</u>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286조의3(결정의 취소)</p> <p>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u>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 제286조의2 제2항을 추가하여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회부를 가능하게 하되,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둠



-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을 고려할 때,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에 있어서도 기존처럼 검사의 의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의견을 듣도록 제286조의3을 개정
- 피고인에 대하여만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상정 가능하나, 검사, 피고인에게 모두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계함
 - ① 피고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나아가 법관이 사건 및 피고인의 특성에 맞게 회부 재량을 적절히 행사한다면 굳이 검사의 신청을 금지할 필요는 없음
 - ② 검사는 증거기록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재판 초기에 적절한 사건(주로 자백 사건이 될 것임)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 심판을 신청함으로써 법원과 피고인에게 숙고할 시간을 부여하고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음(예컨대 검사가 자백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간이공판절차 심판을 신청하고, 1회 기일 전에 피고인·변호인이 숙고한 후 기일에서 동의 여부를 신중히 밝히는 실무례 형성 가능)
- 후술하는 21대 국회 개정안과 같이 변호인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 심판 신청 또는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그러나 변호인이 없는 사건은 오히려 덜 복잡한 사건인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한 경우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간이공판절차 심판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법관이 변호인이 없는 사건에서도 사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사전에 자세한 설명(안내 양식 등 보완)을 통하여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례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다. 장점 및 한계

■ 장점



-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법자원 운용 가능
- 형사소송법 규정과 재판실무의 불일치로 인한 위법 요소 제거 → 형사 재판부, 특히 단독 재판부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 진행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해소
- 기존 신속처리절차 입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입법 가능성 → 후술하듯 21대 국회에서 법무부도 이견이 없었던 법안임

■ 한계

-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간이공판절차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이 부분 비효율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려움
- 재판실무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규범의 현실화), 요건 완화로 인한 사건처리건수나 처리율 증가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소지 있음

라. 개정안에 대한 상정 가능한 비판론과 이에 대한 반론

■ 간이공판절차 확대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조서재판으로의 회귀가 아닌지

- 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임 → 간이공판절차는 조서 재판이 아닌 공판정에서의 심증 형성에 꼭 필요한 증거에 대하여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고 당사자 쌍방이 간이공판절차로의 진행에 동의하면서 양형 또는 법리에 대한 심리에 집중해주기를 원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함
- 또한 사법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 변호인 없는 피고인의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동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 형사소송규칙 제131조에 의하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재판장이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 자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 표준안 또는 교부 양식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 있음
 - 나아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간이공판절차 회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회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실무례 형성 가능
 - 필요하다면 후술하는 21대 법률안과 같이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동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증거능력 등에 대한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함에도 자백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증거조사를 간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지
 -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이라고 하여 ‘증거능력’에 관하여 적용되는 증거법칙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음
 -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본문)이 있기는 하나,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다투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동의를 의제되지 않고 증거능력에 관한 전문법칙이 그대로 적용됨
 -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만 간이하게 할 수 있을 뿐임

3. 21대 국회 논의 경과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발의 경과



- 2021. 11. 8. 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2113172호)
- 제안 이유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됨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증대로 절차 소요 시간이 늘어난다는 면도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 제286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희망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이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로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간이화되어 신속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내용

현행	개정안
<p>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p> <p>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 다만,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다.
<p>제286조의3(결정의 취소)</p> <p>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p>	<p>제286조의3(결정의 취소)</p> <p>-----</p> <p>-----</p>



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 ----- 검사, 피 <u>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u> ----- -----.
---	--

- ‘당사자의 신청 및 상대방의 동의’ 를 개시 요건으로 추가
- 다만, 간이공판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또는 동의를 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신청 또는 동의 가능

나. 21대 국회 논의 경과

▣ 2021. 12. 7. 법사위 1소위 논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 규정 시행(2022. 1. 1.)을 앞두고 함께 논의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됨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증대로 절차 소요 시간이 늘어난다는 면도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

▣ 전문위원 검토 의견

- 간이공판절차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재판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긍정적이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및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간이공판절차 취소결정 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도 타당함

▣ 관계부처 의견

- 법무부: 이견 없음
 -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음



- 법원행정처: 찬성 의견

■ 1소위 당시 주요 의견

- A 의원: ① 현재도 이미 간이하게 하고 있으므로 심리기간 단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음, ② 일부 지엽적인 반성문, 탄원서 문구만으로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²⁴⁾ ③ 불편함과 시간 소요, 비용 소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진실발견,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B 의원: 자백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엄격히 조사하여야 하는데, 일반 피고인들은 증거능력에 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간이한 절차를 만드는 것은 신중할 필요²⁵⁾
- C 의원: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 있음. 다만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였다가, 상급심에서 파기된 후 정식절차로 진행한 사례에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준비해서 보고해줄 것
- D 의원: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신청권은 주어야 하고, ‘검사’가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에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있음

■ 계속 심사 및 임기 만료 폐기

- 당시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더 이상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됨

Ⅶ. 결론

■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를 위한 입법적 조치 필요

24)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로 반성문, 탄원서 문구를 근거로 파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5)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 외 증거능력은 그대로 적용되고, 전문법칙에 대하여도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음



-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는 법정에서 심증 형성에 필요한 중요 증거 위주로 효과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증거조사보다 양형, 법리 등 당사자의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심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효율적 심리를 통하여 확보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전체 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건과 증거의 특성,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탄력적·효율적 증거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간이공판절차가 적절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자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간이공판절차 회부 요건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필요



[별지]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논의 경과

▣ 2004. 12.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채택

- 개혁의 목표 제시 : ① 형해화된 공판절차의 실질화 + ② 국민사법참여
- 사법자원 확보 전략 제시 : ‘선택과 집중’
 - ①, ②에 사법자원 집중 투여 ⇨ 그 외 영역에 투여되는 사법자원 최대한 절약
 - 사법자원 절약방법 ⇨ ‘신속처리절차 신설’
- 신속처리절차의 내용
 - 신속처리절차 : 매일 개정 / 당일 선고 / 절차 및 판결 간이화 / 선고 형량 제한(실형 1년 이하)
- 신속처리절차 이외의 통상처리절차는 공판중심주의적으로 재설계

▣ 2005. 9. 15.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의결

사물관할	구분	부인사건	자백사건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	중대한 사안	통상처리절차(정식공판절차)	통상처리절차(간이공판절차)
형사단독사건	비교적 중하고 복잡한 사안		
	비교적 중하지만 단순한 사안	신속처리절차(출석신속절차)	
	비교적 경미한 사안		신속처리절차(출석당일재판)
벌금(약식명령)	경미한 사안	신속처리절차(서면신속절차)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즉결심판)	아주 경미한 사안	신속처리절차(즉시심판절차)	

- 신속처리절차(출석신속절차, 출석당일재판)의 주요내용



<p>대상</p>	<p>① 형사단독사건 중, 사실관계 단순하고 증거 명백한 사건과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p> <p>② 검사가 선택하는 사건 [선고가능 형량 제한(실형 1년 이하 + 집행유예 + 벌금 이하)으로 예상 구형량이 실형 1년 초과인 경우 선택 가능성 無]</p> <p>③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하면 불가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그 의사 확인)</p>
<p>심리절차</p>	<p>◆ 검사의 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장에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 + ‘양형에 관한 의견’ 기재 - 공소제기와 함께 수사서류와 증거물 법원 제출 (공소장일본주의 배제) <p>◆ 전화, 전자우편 등에 의한 피고인 즉시 소환 허용</p> <p>◆ 제1회 공판기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장이 인정신문 후 피고인이 통상처리절차 원하는지 확인 - 피고인이 통상처리절차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처리절차 회부 - 법원 직권 통상절차회부도 가능 ⇨ 불복 X <p>◆ 증거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없음 (전문법칙 그대로 적용) - 증거조사방식 완화 ⇨ 피고인 또는 변호인 동의 받아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 (간이공판절차와 동일)
<p>선고</p>	<p>◆ 선고 가능 형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형 1년 이하 + 집행유예 + 벌금 이하 (실형 허용 여부는 법원/검찰 간 이견 有) <p>◆ 판결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조서 기재로 대체 허용 - 참여관으로 하여금 조서에 범죄사실 및 해당법조 기재하게 한 뒤 재판장의 ‘서명’을 추가하는 방식 - 범죄사실 및 해당법조만을 기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의 요지, 형의 가중/감면 이유에 대한 기재 생략 가능 - 다만, 항소의 제기가 있거나 판결 확정 전 판결서 등본 교부 청구가 있는 경우 정식 판결문 작성하도록 함
<p>출석당일재판의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단독사건 중 사실관계 단순하고 증거 명백하며, 피의자 및 변호인 ‘동의’ 하는 사건 ◆ 절차상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신청 : 출석신속재판청구와 동시에 출석당일재판 신청서 제출 - 공소장부분 송달 생략 : 검사가 요지 고지 + 법원은 사후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교부 - 피고인 소환: 검사에게 피고인 출석시킬 의무 부여, 법원은 상시개정 의무, 피고인 불출석 시 절차진행 불가하여 새로 공판기일 지정하고 일반적인 출석신속절차로 전환 - 원칙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로 심리종결 후 즉일선고

▣ 2006. 1. 6. 정부 법률안 제출

- 2006. 9. 25.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
 - 신속처리절차에 대한 비판론의 핵심: ① 현행 간이공판절차와 차이가 없음, ② 공소제기된 당일 심리하여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출석당일재판의 줄속심리 가능성
- 2007. 2. 21.~28. 속칭 ‘4인 소위’ 활동(이상민, 문병호, 주성영, 이주영)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관련 조항들은 원안 통과시키되, ‘신속처리절차’ 관련 조항들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 2007. 4. 30. ‘4인 소위’의 합의 바탕으로 한 법제사법위원장의 수정안 국회 통과, 전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08. 1. 1.부터 시행

▣ 2012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재추진

- 기존 사개추위안의 일부인 ‘출석신속절차’ 만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하는 방안 추진 검토

- 신속처리절차로 진행된 사건의 선고 가능 형량 등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무산
 - 법원 주장: 1년 이내 실형 선고 + 법원의 직권 통상절차 회부권
 - 검찰 주장: 집행유예만 가능 + 법원의 직권 통상절차 회부권 ×